

# 『2022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 운영 계획

## 1 추진 목적

- 국내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창의력 및 전공 역량 강화
-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

## 2 지원 자격

- 국내 공모전, 경진대회 및 학술대회 등 대외 경진대회 참가 학생
  - ※ 작품 또는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해 지원. 즉, 단순 참가는 지원하지 않음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참여 대학[금오공대, 경북대(상주), 안동대, 동양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신청서 접수순),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3 지원 내역

- 소요예산: 금10,000,000원
  - 산출내역: 250,000원×40명=10,000,000원
    - ※ 대회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지원금액이 1인당 250,000원, 팀당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4차년도 사업비 배정 후 대학별 예산 배분 예정

## 4 세부내용

- 대회 개최일 기준: 공지일 ~ 2023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활동비 지원
  - 지급 기준에 따른 실비 지원
  - 참가경비[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등), 등록비, 기타 경비 등] 지원

## 5 제출 서류 및 기간

- 대외활동 참가일 최소 3일 전,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
- 참가 종료 후 10일 이내, 경비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6 의무 사항

- 경비 정산서(증빙자료, 결과보고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 사본 포함) 제출
- 경비 정산서 미제출 및 참가 경비의 부당집행이 발생한 경우, 부당집행금액 전액을 환수하며, 이후로 사업팀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제한

## 7 소요예산 및 재원

- 대학회계-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한국연구재단)이월금-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활동지원금

## 8 문의처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팀(054-478-7994, prog@kumoh.ac.kr)
-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 315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팀
- ※ 추후 본관 101호로 이동 예정
- ※ 협력대학은 대학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 운영 지침

제정 2019. 10.

1차 개정 2020. 01. 03.

2차 개정 2020. 11. 04.

3차 개정 2022. 01.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선도대학: 금오공과대학교, 협력대학: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상주), 동양대학교]의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의욕을 고취하여 창의력 및 전공 역량을 함양한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 프로그램은 기획협력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술대회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 자격)** ① 본 프로그램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재학생(학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해외연수 및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용(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지급 가능

②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팀(학생)은 관련 공문 및 대회 정보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종료되기 10일 이전까지 대회 참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팀(또는 학생)은 해당 대회에 관련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팀(또는 학생) 역시 해당 대회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팀원이 논문의 저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단순 참가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내용)** ①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술대회 참가 경비 일체(등록비, 일비, 식비, 운임 및 숙박비 등)를 지원한다. 단, 1인당 지원 금액은 250,000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팀별 지원 금액은 2,000,000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가 경비는 사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의 경우 [별표 1] 여비 지급 기준(공무원 여비 규정 반영)을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팀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③ 경비지원 기준일은 대회 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 사업팀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전(前)일 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배정 및 활용)** ① 대학별 예산은 당해년도의 참여 학생 인원 배분 결과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② 대학 내 참여학과별 예산 배정은 대학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원 절차)** ① 사업팀은 제7조에 따라 대학별 예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당해연도 운영 계획을 각 대학에 공지한다.

② 사업팀은 당해년도 운영 계획을 공지한다

③ 참가 팀(학생)은 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학과에 공모전 및 경진대회 경비 지원신청서[별표 2, 3]를 접수한다.

④ 사업팀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 지급 내역을 해당 팀(학생)에게 통보한다.

⑤ 참가 팀(학생)은 대회 참가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별표 4] 및 증빙자료[별표 5]를 제출한다.

⑥ 사업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다.

**제9조(제한 조치)** ① 참가경비의 부당집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경비정산서(증빙자료, 결과보고서 등 결과 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 학생들에 대해 이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제정 2019. 10. 00.)**

(1차 개정 2020. 01. 03.)

(2차 개정 2020. 11. 04.)

(3차 개정 2022. 01. 03.)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